

송 달 영 수 인 선 정 신 고

사	건	20○○고합	000호	00		
피	고 인	0 0 0				
위	사건에	관하여 다음	사람을 성	·달영수인으로	선임하였으므로	신고합니다.
			1	다	습	

송달장소	ㅇㅇ시	0구	○길	00
송달영수인				

 2000년
 0월
 0일

 위 피고인
 0
 0
 (인)

 송달영수인
 0
 0
 (인)

			ı	에 대한법률구조공단	
제출법원	사건계속 법원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		www.klac.	
신청권자	·피고인, 대리인, 대표자, 변호사 또는 보조인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60조		
사 유 피고인, 대리인, 대표자,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					